



도민이 중심  
신뢰받는 의회

제41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2023. 10. 16.(월) 10:00

#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충청북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충청북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1. 발의자: 김현문 의원 등 7인

2.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

- 발의일자: 2023년 10월 4일
- 회부일자: 2023년 10월 4일

3. 제안 이유

- 충북 도내 학교폭력의 유형과 추세 등에 대한 명확한 파악을 위해 교육장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보고회에 제출된 자료를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지원과 가해학생의 문제행동에 대한 단계별 대응방안 개발 지원 등 선도·교육·조치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담아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정기회(학기별 1회)에 제출된 내용에 대한 충청북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 보고 사항 신설 (안 제3조제5항)
- 피해·가해학생 지원에 관한 조문 분리 및 이에 따른 문구 정리 (안 제6조)
- 교육감의 가해학생 문제행동 단계별 대응방안 개발 지원 및 학교장의 가해학생 선도·교육 등을 위한 사전 조치 지원 사항 신설 (안 제7조)

## 5. 검토 의견

### 가. 조례 개정 이유

- 급증하는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충청북도 도내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학교폭력의 유형과 원인 등에 대한 명확한 파악과 함께 적극적인 선제적 예방 노력이 필요함.
- 특히, 지난 해 도내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례는 2,537건이며, 올해 8월까지 접수된 학교폭력도 1,536건으로 집계되고 가운데, 이 같은 수치도 피해 신고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례이며, 교사 등의 중재로 학교에서 자체 종결하는 경우가 10건 중 6건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반면, 교육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까지 상정된 사안도 올 8월 기준 526건에 달하는 등 학교폭력으로 인한 갈등이 학교 밖으로 확대되는 사례도 늘고 있음.

#### < 최근 3년간 도내 학교폭력 발생 관련 현황 >

학년도	신고접수건수	학교장 자체해결건수	심의위원회건수
2020	1,444	844	600
2021	2,398	1,559	839
2022	2,537	1,615	922
2023.8	1,536	1,010	526

- 이에 따라, 본 개정조례안에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정기보고회에 제출된 학교폭력 관련 심의 자료를 도내 각 교육지원청의 장이

충청북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함.

- 이와 함께, 기존 조례의 제6조(피해·가해학생 지원)를 제6조(피해 학생 보호·치료·재활 등 지원)과 제7조(가해 학생 선도·교육·조치 등 지원)으로 분리해, 각 조문별 내용을 정리하고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지원 사항,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조치 등의 내용을 명확히 규정한 것으로 사료됨.
- 특히, 조문 분리로 신설된 제7조(가해학생 선도·교육·조치 등 지원)에서는 교육감이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문제행동에 대한 단계별 대응 방안 개발 등 선제적 지도체계의 구축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와 함께, 학교장이 반성문 작성 등 기타 학칙과 법령을 포함한 적극적인 교육적 사전 조치를 통해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조치 등 지원을 위한 노력을 규정하고 있으며,
- 이러한 내용은 지난 4월,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 대책의 주요 내용인 ‘단위학교의 학교폭력 대응력 제고’에 따른 학교장의 자체해결 범위 확대 등 교육적 해결 역량 회복과 학교의 선제적 개입을 위한 기반 마련이라는 점에서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와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됨.

## 나. 주요내용

- 안 제3조(책무)제5항에는 충북 도내 각 교육지원청의 장이 학기별로 1회씩 실시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sup>1)</sup> 정기보고회에 제출된 학교폭력 관련 심의 자료(학교장 자체 해결 및 소위원회 심의 결과)를 충청북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함.
  
- 기존 조례 제6조(피해·가해학생 지원)에서는‘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조치’라는 이질적인 목적과 상위법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제16조(피해학생 보호)와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 관련 조항을 분리해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지원’이라는 단일 조항에 내용을 담고 있었음.

---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제12조(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설치·기능)** ①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0조에 따른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해당 시·도 조례로 정하는 기관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 보고를 거쳐 둘 이상의 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②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2. 피해학생의 보호
  3.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선도 및 징계
  4.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심의위원회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고 학교장 및 관할 경찰서장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④ 심의위원회의 설치·기능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 및 교육지원청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이에, 개정안에서는 제6조(피해학생 보호·치료·재활 등 지원)과 제7조(가해학생 선도·교육·조치 등 지원)으로 분리해, 각 조문별 내용을 정리하고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지원 사항,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조치 등의 내용을 명확히 규정함.
- 여기에 제6조제2호의‘전문 치료 및 재활을 위한 지원’을‘전문 치료 및 재활을 위한 치유기관 확충 및 지원’으로 변경해, 피해학생 보호 및 치료, 재활을 위해 전문 치료 및 재활 치유기관 확대<sup>1)</sup>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 신설한 안 제7조(가해 학생 도·교육·조치 등 지원) 중 제1항에는 교육감이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문제행동에 대해 단계별 대응 방안을 개발하는 등 선제적 지도체계 구축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명시함.
- 이는 충청북도교육청이 지난 9월 20일 발표한‘교육활동 보호 종합 대책’중‘문제행동 학생 대응’방안에도 정책비전과 추진과제로 포함되어 문제행동에 대한 선제적 조치를 통해 학교폭력 예방과 교육활동 보호의 적극적 추진을 규정하고 있음.

1)‘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2023.4. 교육부 등 관계부처 합동)

- 다중 안전망을 통한 피해학생 맞춤형 지원

- 피해학생 전문지원기관 확대 (‘23년 303곳 →‘24년 400곳) 및 유관기관 연계 통한 피해학생 맞춤형 통합지원 강화
- 병의원 협약위탁, 정신건강 자문의 위촉 확대, 고위기 학생 조기 발견 및 전문 심리·의료 지원 강화

< 충북교육청 학교 현장 밀착형 교육활동 보호 종합 대책 (23.9.20) >

② 문제행동 학생 대응

정책비전 : 다양한 선제적 조치로 문제행동 예방

세부	· (신규) 문제행동 학생 단계별 체크리스트 개발
추진	· (신규) 문제행동 학생 지도 대응체계 구축
과제	· (신규) 문제행동 학생 교육적 분리 조치

- 이와 함께, 제7조제2항에서는 학교장이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조치 등 지원을 위해서 관계법령 및 지침과 학칙에 따라 적극적인 사전조치가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는 내용을 신설함.
- 이는 지난 4월 교육부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발표한‘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과 지난 10월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내년 3월 시행되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인 단위학교의 학교폭력 대응력 제고를 위한‘학교의 교육적 조정기능 강화’에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됨.

<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23.4.12) 기본방향 >

- ◆ 일방·지속적 학교폭력에는 무관용 원칙
- ◆ 학교폭력 피해학생 중심의 보호조치 강화
- ◆ 현장의 학교폭력 대응력 제고 및 인성교육 강화

다.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충북 도내 학교폭력 사례에 대한 명확한 실태 파악과 예방을 위한 교육감 등의 선제적 조치 노력 등을 신설하고,

피해 학생에 대한 치유기관 확충 등 지원 확대를 명시해 ‘피해학생 중심의 보호조치 강화’라는 정부의 학교폭력 대응 기본방향에 부합한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일방·지속적 학교폭력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지만, ‘학교현장의 교육력 회복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과 근본적 해결’의 실현을 위해 학생자치활동과 또래 프로그램을 통한 지도, 반성문 작성 등 교육적 사전 조치의 추진을 규정한 부분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 또한, 개정안의 조문 체계와 주요 내용이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고, 집행부 담당 부서와의 협의, 조례안 예고 등의 입법절차를 준수하여 전체적으로 타당한 조례 개정이라 판단됨.



# 충청북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문에 대한 의견 접수 검토 및 조치 결과

- 조례안 예고기간: 2023년 10월 6일 ~ 11일
- 의견접수: 총 1건
- 의견접수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음

제출자	현행 조례	개정안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내용	조례안 예고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조치결과
충청북도교육청 인성시민과  : 임법예고 기간 지역 교육지원청 의견조회 후 취합	제3조(책무) ① 충청북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 라 한다)은 학교폭력 예방 과 근절을 위하여 학교폭 력 예방활동 지원, 피해학 생의 보호·치유, 가해학 생의 선도·교육 등 필요 한 교육시책을 마련하여 야 한다. ② 교육장은 학교폭력이	제3조(책무) ①~④(현행과 같음) <신설> ⑤ 교육장은 학교 로 1회씩 개최되는 학교 폭력대책심의위원회 보고 회에 제출된 내용을 충청 북도의회 해당 상임위원 회에 보고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 의회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서류제출 요구와 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결과에 따른 행정 사무처리 상행의 결의응답 요구 권한 등을 가지고 있음. ○ 개정안 제3조제5항은 지 방자치법상 규정된 지방의 회의 권한 외에 교육장에	○ 반영 ○ 본 개정안 신설 조항은 지역별 학교폭력 처리 상황 과 유형 등의 현황을 정기 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취 지로 추진되었으나, [지방자치법, 제48조(서류제출 요구)에 따라, 지방의회나 위 원회는 서류제출 요구 권

	<p>발생한 경우 법령과 이 조례에 따라 지체없이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p>③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법령과 이 조례에 따라 지체없이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④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의 이행에 협조하여야 한다.</p>		<p>게 지방의회 해당 위원회에 대한 보고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므로 법적 근거가 없음.</p> <p>○ 현행법령에 의하더라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보고회에 제출된 내용이 안전의 심의와 관련된 것이라면, 지방의회 의장은 교육장에 게 해당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 개정안의 도입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움.</p> <p>○ 따라서,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에 불필요한 행정부담 발생 방지를 위해 <u>삭제</u>의견을 제시함.</p>	<p>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별도 보고 규정을 조례에 명시할 필요가 없음.</p>
--	---	--	---	--